별첨4 장애인 편의지원 안내

1 제공 대상

○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
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된 자

○ 시각·지체·뇌병변·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

2 신청방법

○ **신청기간: 입사지원서 접수 시, 2026.10.22.(목)~2026.11.6.(금) 오후 2시까지**

○ **신청방법**:

- 입사지원서 접수 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의 해당사항 확인
- 입사지원서 작성 시 본인이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 체크 및 증빙서류 제출

※ 채용시험 편의지원 신청서 양식 : 입사지원서 내 [별첨 2] 참고

- 증빙서류와 편의지원 사항 일치 확인 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면접전형 편의제공 가능여부 개발 안내 예정

3 유의사항

○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(2p)에서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,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의사진단서는「의료법」제2조에서 정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에서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('26.11.6.)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.

※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의 [병원·약국 찾기]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며,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(날인)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

○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

① 장애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구제적 진술

※ 시각장애의 경우, 시력 또는 시야각 명기

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

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

-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하는 항목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
- 입사지원서 작성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의함
- 편의지원 신청 당시 장애정도와 응시예정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의 장애정도가 다를 시에는 편의지원 제공 내역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4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

○ 면접전형

장애유형		편의지원 내용	증빙서류
지체장애	장애정도가 심한 자 / 심하지 않은 자	·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	장애인증명서
뇌병변장애		·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·면접시간 1.5배 연장	장애인증명서, 의사진단서
시각장애		·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	장애인증명서
청각장애		·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·필담면접 제공 ·의사전달보조요원 지원 ·보조공학기기 착용 허용 ·면접시간 1.5배 연장	장애인증명서, 의사진단서

※ 시험시간(면접시간) 1.5배 연장은 종합병원 의사진단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제공여부를 결정하므로 진단서 원본 제출 필요(종합병원 이상)